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청년의 능동적인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수당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 보완(안 제9조 제1항)
- 나. 청년정책참여단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6조)
- 다.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안 제14조 ~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각 국의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목”을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와 참여단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에 출석하는”을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청년정책참여단”을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회와”를 “위원회 운영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u>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 ----- -----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u> ----- ----- <u>.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1. 당연직 위원 : <u>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u>	1. ----- <u>각 국의 국장</u>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하는 사람.</u> 이 경우 청년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 <u>목에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u> <후단 삭제>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위원의 해촉) -----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5조 (생략)

제16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
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
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을 육
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
참여단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
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참여
단 -----

-----.

----- 참석
하는 -----
-----.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청년정책참여단) ① ----

----- 청년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
다)-----
-----.
② ----- 참여단-----

-----.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의 각종 <u>위원회</u>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회</u> 운영 및 ----- ----- -----. ③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 수당 지급(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년정책참여단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2020년 소요예산 5,880천원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5,880
청년정책참여단 수당	70,000원×28명×3회	5,880

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용국(480-2612)

소관 실 · 과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은 영
	담 당	김 현 주
	담 당 자	김 용 국 (480-2612)